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3. 9.

사회건설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발의일자 : 2009년 2월 13일

나. 발 의 자 : 김종태 의원 외 4인

다. 회부일자 : 2009년 2월 27일

라. 상정일자 : 제14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9년 3월 2일)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 설명자 : 김종태 의원)

가. 제 정 이 유

-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가선용을 지원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생활체육협회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생활체육협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 요 내 용

-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진흥대상사업의 범위에 생활체육협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을 신설하고(안 제4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별표 1 진흥사업대상에 생활체육협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기함.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이남식)

-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협회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4조 제1항에 생활체육진흥대상사업 범위에 생활체육협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9
----------	-----

발의년월일 : 2009년 2월 일

발의자 : 김종태 의원외 인

1. 개정이유

-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가선용을 지원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생활체육협회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생활체육협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진흥대상사업의 범위에 생활체육협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을 신설하고(안 제4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별표 1 진흥사업대상에 생활체육협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기함(별표 1)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 라.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3조제2항에서의 진흥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범 구민 문화예술·체육행사(동민체육대회 포함) 개최 및 지원
2. 생활체육관련단체의 종목별대회 개최 및 지원
3. 생활체육동호인 육성·지원
4.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
5. 학교체육 육성·지원
6. 문화예술관련행사(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7. 지자체 또는 국제간 체육·문화예술 교류
8. 교실(위탁교실 포함)의 설치·운영
9. 기타 문화예술·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개최 및 지원

별표 1 진흥사업대상 중 “체육행사”란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구분	행 사 명	대상 및 범위, 방법	비고
체육 행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	- 대상: 구 생활체육협의회 - 내용: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	연중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규 대조표

현행 조례안	개정 조례안																																																								
<p>(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p> <p>제4조 ①제3조제2항에서의 진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범 구민 문화예술·체육행사(동민체육대회 포함) 개최 및 지원 2. 생활체육관련단체의 종목별대회 개최 및 지원 3. 생활체육동호인 육성·지원 4. 학교체육 육성·지원 5. 문화예술관련행사(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6. 지자체 또는 국제간 체육·문화예술 교류 7. 교실(위탁교실 포함)의 설치·운영 8. 기타 문화예술·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개최 및 지원 	<p>(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p> <p>제4조 ①제3조제2항에서의 진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범 구민 문화예술·체육행사(동민체육대회 포함) 개최 및 지원 2. 생활체육관련단체의 종목별대회 개최 및 지원 3. 생활체육동호인 육성·지원 4.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 5. 학교체육 육성·지원 6. 문화예술관련행사(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7. 지자체 또는 국제간 체육·문화예술 교류 8. 교실(위탁교실 포함)의 설치·운영 9. 기타 문화예술·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개최 및 지원 																																																								
<p>[별표 1] 진흥사업대상(제4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구분</th> <th style="width: 20%;">행 사 명</th> <th style="width: 55%;">대상 및 범위, 방법</th> <th style="width: 2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체육 행사</td> <td>구민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td> <td>- 대상: 한마음체육대회, 동민체육대회, 건강달리기대회 등 - 내용: 대회참가자에 대한 시상금품, 경품 총 행사비의 30퍼센트 이내 제공가능) 지급 · 동민체육대회시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td> <td>정기</td> </tr> <tr> <td></td> <td>종목별대회 개최 및 지원</td> <td>- 대상: 각 종목별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대회 등 - 내용: 각 종목별 행사주관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td> <td>정기</td> </tr> <tr> <td></td> <td>체육동호인 육성·지원</td> <td>- 대상: 전국·시·도 단위 체육대회 등 - 내용: 전국·시·도 단위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종목별 연합회에 대한 참가비 지원</td> <td>수시</td> </tr> <tr> <td></td> <td><신설></td> <td><신설></td> <td><신설></td> </tr> <tr> <td></td> <td>학교체육 육성·지원</td> <td>- 대상: 소년체전 등 각종대회 및 꿈나무 육성학교 - 내용: 소년체전 등 각종대회 참가 및 우수꿈나무육성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td> <td>수시</td> </tr> <tr> <td></td> <td>체육교실 육성·지원</td> <td>- 대상: 구 및 동 생활체육교실 등 - 내용: 구민 체위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교육의 무료 또는 유료강좌 실시</td> <td>연중</td> </tr> </tbody> </table> <p>(이하 생략)</p>	구분	행 사 명	대상 및 범위, 방법	비고	체육 행사	구민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 대상: 한마음체육대회, 동민체육대회, 건강달리기대회 등 - 내용: 대회참가자에 대한 시상금품, 경품 총 행사비의 30퍼센트 이내 제공가능) 지급 · 동민체육대회시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정기		종목별대회 개최 및 지원	- 대상: 각 종목별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대회 등 - 내용: 각 종목별 행사주관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정기		체육동호인 육성·지원	- 대상: 전국·시·도 단위 체육대회 등 - 내용: 전국·시·도 단위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종목별 연합회에 대한 참가비 지원	수시		<신설>	<신설>	<신설>		학교체육 육성·지원	- 대상: 소년체전 등 각종대회 및 꿈나무 육성학교 - 내용: 소년체전 등 각종대회 참가 및 우수꿈나무육성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수시		체육교실 육성·지원	- 대상: 구 및 동 생활체육교실 등 - 내용: 구민 체위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교육의 무료 또는 유료강좌 실시	연중	<p>[별표 1] 진흥사업대상(제4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구분</th> <th style="width: 20%;">행 사 명</th> <th style="width: 55%;">대상 및 범위, 방법</th> <th style="width: 2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체육 행사</td> <td>구민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td> <td>(현행과 같음)</td> <td>정기</td> </tr> <tr> <td></td> <td>종목별대회 개최 및 지원</td> <td>(현행과 같음)</td> <td>정기</td> </tr> <tr> <td></td> <td>체육동호인 육성·지원</td> <td>(현행과 같음)</td> <td>수시</td> </tr> <tr> <td></td> <td>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td> <td>- 대상: 구 생활체육협의회 - 내용: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td> <td>연중</td> </tr> <tr> <td></td> <td>학교체육 육성·지원</td> <td>(현행과 같음)</td> <td>수시</td> </tr> <tr> <td></td> <td>체육교실 육성·지원</td> <td>(현행과 같음)</td> <td>연중</td> </tr> </tbody> </table> <p>(현행과 같음)</p>	구분	행 사 명	대상 및 범위, 방법	비고	체육 행사	구민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현행과 같음)	정기		종목별대회 개최 및 지원	(현행과 같음)	정기		체육동호인 육성·지원	(현행과 같음)	수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	- 대상: 구 생활체육협의회 - 내용: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	연중		학교체육 육성·지원	(현행과 같음)	수시		체육교실 육성·지원	(현행과 같음)	연중
구분	행 사 명	대상 및 범위, 방법	비고																																																						
체육 행사	구민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 대상: 한마음체육대회, 동민체육대회, 건강달리기대회 등 - 내용: 대회참가자에 대한 시상금품, 경품 총 행사비의 30퍼센트 이내 제공가능) 지급 · 동민체육대회시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정기																																																						
	종목별대회 개최 및 지원	- 대상: 각 종목별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대회 등 - 내용: 각 종목별 행사주관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정기																																																						
	체육동호인 육성·지원	- 대상: 전국·시·도 단위 체육대회 등 - 내용: 전국·시·도 단위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종목별 연합회에 대한 참가비 지원	수시																																																						
	<신설>	<신설>	<신설>																																																						
	학교체육 육성·지원	- 대상: 소년체전 등 각종대회 및 꿈나무 육성학교 - 내용: 소년체전 등 각종대회 참가 및 우수꿈나무육성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수시																																																						
	체육교실 육성·지원	- 대상: 구 및 동 생활체육교실 등 - 내용: 구민 체위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교육의 무료 또는 유료강좌 실시	연중																																																						
구분	행 사 명	대상 및 범위, 방법	비고																																																						
체육 행사	구민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현행과 같음)	정기																																																						
	종목별대회 개최 및 지원	(현행과 같음)	정기																																																						
	체육동호인 육성·지원	(현행과 같음)	수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	- 대상: 구 생활체육협의회 - 내용: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	연중																																																						
	학교체육 육성·지원	(현행과 같음)	수시																																																						
	체육교실 육성·지원	(현행과 같음)	연중																																																						